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第2次報告書

1996. 7.

法 務 部

目 次

序 論	1
一般的事項	2
個別的事項	6
제 1 조	6
제 2 조	7
제 3 조	11
제 4 조	20
제 5 조	21
제 6 조	22
제 7 조	27
제 8 조	30
제 9 조	32
제 10 조	36
제 11 조	44
제 12 조	44

제13 조	46
제14 조	46
제15 조	53
제16 조	54
제17 조	55
제18 조	57
제19 조	59
제20 조	63
제21 조	65
제22 조	66
제23 조	70
제24 조	72
제25 조	76
제26 조	78
제27 조	79

序 論

1. 대한민국은 1991. 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92. 7. 제45차 인권이사회에서 등 보고서의 심의를 받았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차보고서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일반지침과 최초보고서 심의 당시 제기된 사항들을 참조하면서 최초보고서 제출이후 5년동안 대한민국에서 규약의 이행을 위해 취하여온 조치를 법령과 제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2. 최초보고서 제출이후 대한민국에서의 큰 변화의 하나는 1993. 2.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문민정부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속에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였다.

인신구속의 신중, 변호인접견권의 강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의 확충,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확대 등 인권신장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실시에 의한 민주주의의 정착, 통합 선거법 시행에 의한 참정권의 실질적 확대,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경제정의의 실현 등 수년사이에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보증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3.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행한 변화와 개혁조치를 규약의 각 조항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인권보장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一 般 的 事 項

1812 - 12월 20일 (General Comments)

大韓民國의 人權保障體系

4. 대한민국은 권력의 상호견제 및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대통령중심제의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은 각각 국회, 행정부,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 국회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권을 행사한다. 또한 국회에 대통령등 탄핵소추권, 국무총리등 해임건의권,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을 부여하여 행정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행정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증진을 위한 제반 행정조치를 취한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여 주며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으며 신분보장을 받는다.

5. 대한민국에는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판결기관으로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구제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함으로써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토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는 헌법보장자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88. 9. 헌법재판소가 개소된 이래 1996. 6. 현재까지 67개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이미 43개의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4개의 법률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부처에서 법률적용을 하지 않고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 34건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다수 선고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規約과 國內法과의 關係

6.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약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의하여 비준·공포되었으므로 별도의 국내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와 법원은 권한행사에 있어 규약의 조항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비록 규약상의 권리가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존중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규약 비준전에 제정된 법률과 규약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규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하여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러한 법률은 헌법위반이 될 것이다.

7. 개인이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 규약에 상응하는 국내법을 토대로 판결을 하고, 규약 내용과 상응하는 국내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규약의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직접 원용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명예회복을 위한 사죄광고의 강요가 양

심의 자유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원용하고 있다 (1991. 4. 4. 89헌마160호).

8. 대한민국은 규약 비준시 제14조 제5항, 제14조 제7항, 제22조, 제23조 제4항을 유보하였으나 1991. 3. 15. 제23조 제4항의 유보를 철회하였고, 1993. 1. 21. 제14조 제7항의 유보를 철회하였다.

規約의 弘報

9.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고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규약의 내용을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민을 상대로 생활법률을 소개하기 위하여 매년 10만부씩 발행되는 책자인 '법과 생활'에 1992년부터 규약의 주요내용과 규약 당사국의 의무사항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규약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994. 2.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14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원문과 한글번역본을 함께 수록한 '국제인권조약자료집'을 발간·배포하고, 1995. 12.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인권이사회에 대한 개인청원의 요건과 절차 등을 설명한 '국제인권규약과 개인청원'을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검찰, 경찰, 교도소 등 인권관련업무 담당직원을 비롯한 각급공무원들에게 규약의 정신이 철저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도부터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상대로 변호사 자격 부여전에 2년간 교육을 하는 사법연수원의 교과과목으로 '국제인권법'을 채택하여 규약의 주요내용과 규약을 침해당한 자의 구제조치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1997년

한편 법무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의 생활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강연회, 좌담회 등을 통하여 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중소도시·농어촌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법률봉사활동시에도 규약의 정신을 홍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12. 10.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전후하여 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데 1991년에는 '현대사회에서의 정보공개와 인권보장'을, 1992년에는 '환경문제와 인권'을, 1993년에는 '산업재해와 장애인의 인권'을, 1994년에는 '범죄피해자와 인권'을, 1995년에는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전개하여 인권의식을 고취하였다.

個 別 的 事 項

(Information in relation to each
of the articles of the Covenant)

제 1 조

10. 규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자결권은 인종, 종교, 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국제사회에서 존중되어 왔다. 대한민국은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제연합헌장과 본조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을 일관되게 인정하여 왔다. 헌법 전문과 제5조 제1항은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천명하여 국제사회에서 자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력의 사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자결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여러 형태의 국제적·외교적 노력에 최대한 협력함을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족이나 국가단위의 자결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아울러 존중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평등·보통·비밀선거에 의하여 자기의 생각을 자유로이 표명하고 정치적 지위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11. 자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1994. 4.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금에 1,200만불을 기여할 것을 서약(pledge)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94-1998년간 EDCF 자금으로 1,000만불을 제공하고, 무상원조 형태로 200만불을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무상원조 일부가 제공되었다. 또한

1996. 1. 파리에서 개최된 팔레스타인 원조 각료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300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추가지원키로 발표한 바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행되었던 아파타이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된 철폐노력에 대한민국도 적극 참여하여 그 철폐를 이끌어 내었는데 이는 앞으로 자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조

12.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차별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기타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의견등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된다.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금지는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13. 헌법에서는 위 제11조의외에도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서는 평등선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제1항에서의 능력이라 함은 일신

전속적인 재능을 말하고 재력이나 가정환경등 비전속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입학허가는 가능하지만 재력, 가정환경등을 이유로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4.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된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분명한 권리를 제외한 여타의 규약상의 권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내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보장된다.

15. 이와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평등한 권리는 근로기준법, 직업훈련 기본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다양한 구제수단이 있음은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雇傭政策基本法 制定과 平等한 權利 保障

16.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 모두가 차별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3. 12. 27. 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또는 출신학교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특정범주 근로자의 고용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의 고용과 관련하여 제17조에서는 “국가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직업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제16조에서는 “국가는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취직에 적합한 직종의 개

발, 직업능력 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한편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1991. 12. 31.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고령자 기준 고용률 설정 및 고용지도 등을 행하고 있다.

18. 또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 제2항).”고 규정하여 취업과 관련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개채용인원의 2/100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채용토록 하고(제34조),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2/100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제35조) 규정하고 있다.

特殊教育振興法 全面改正을 통한 障礙人教育 活性化

19. 장애인에게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새로운 선진특수교육방법을 도입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994. 1. 7.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특수교육기관의 설치·경영 등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제3조 제1항),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각 시·도에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각 두도록 하였다(제4조 제1항).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은 의무·무상교육으로 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제5조).

가난한 者에 대한 法律救助

20. 대한민국 정부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소송비용의 지원, 소송대리등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여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1987. 9. 1. 발족된 대한법률구조공단(Korea Legal Aid Corporation)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고보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 각지에 50개의 지부·출장소를 두어 농·어민, 월평균수입 100만원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등을 대상으로 민사사건 법률구조를 하고 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최근 3년간 민사사건 법률구조 실적을 살펴보면 법률상담은 1993년 342,049명, 1994년 344,364명, 1995년 365,142명에 대하여, 소송구조는 1993년 34,625명, 1994년 37,729명, 1995년 47,658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1996. 6. 1.부터는 민사사건에 한정되던 법률구조를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하여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농·어민,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영세상인등 일정한 구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하고 있다.

憲法裁判所 決定에 의한 平等한 權利 保障

21. 헌법재판소에 의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률과 행정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이 여러차례 선고되었는 바, 중요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회의원선거법'상의 정당연설회 규정(1992.3.12. 92헌마37호)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은 정당후보와 비정당후보(무소속후보)간에 선거운동에 있어 차별을 야기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다.

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입후보제한 규정(1995.6.12. 95헌마

172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입후보제한 규정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에 관한 결정이나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직원까지 임원이나 집행간부등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③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의 당구장 출입금지표시 게재 규정(1993.5.13. 92헌마80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당구장 영업에만 유독 18세 미만자 출입금지표시규정을 두어 영업의 대상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체육시설업종 당구장경영자에 대하여서만 영업대상자의 범위에 있어서 차별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1991.9.16. 90헌마183호)

검사가 어느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마땅히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고소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서 취소하여야 한다.

제 3 조

女性發展基本法 制定

22.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 및 여성지위향상의 이념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정책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1995. 12. 30.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1995. 9.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문제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인식이 새롭게 환기된 가운데 제정된 이 법은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확대(제15조), 공직참여 확대(제16조), 고용평등(제17조)과 모성보호의 강화(제18조),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에서의 남녀평등 강화(제19조-제21조), 여성복지 증진(제22조),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제23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제24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제25조), 가사노동가치의 평가(제26조), 여성의 국제협력증진(제27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제28조)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성차별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을 도모할 수 있는 성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 여성관련 사업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女性地位 向上을 위한 國家計劃

23.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정책 분야를 본격적으로 국가발전계획에 통합하기 위하여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 - 1996)에 여성개발 부문을 별도로 포함시키고, 교육, 고용, 문화·사회활동, 복지, 국제협력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993년 정부에서 수립한 신경제 5개년계획(1993 - 1997)도 주요 경제시책의 하나로 여성개발부문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수립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4 - 1997)은 고용평등, 모성보호, 취업확대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4. 또한 1995. 1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우선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95. 9.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여성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획기적인 확대

- ②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전국 초등학교 대상)
- ③ 학교급식의 전면적 실시
- ④ 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제고목표 설정
- ⑤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인센티브제 도입
- ⑥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 확립
 - 출산휴가 기간중의 급여를 사회보험 등 공공부문에서 분담
 -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장의 범위 확대
- ⑦ 여성인력 양성체계 확충, 개선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업 및 기술교육 강화
 - 재취업 여성인력의 직업훈련 강화
- ⑧ 여성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
 - 여성정보센터 설치
 - 여성관련 기관간의 정보통신체제 구축
- ⑨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⑩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

女性政策擔當 政府機關의 強化

25.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여성정책 총괄부서인 정무장관제2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38개 부처내에 여성정책관련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매년초 여성정책의 연간 추진실적과 계획을 정무장관제2실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는 미리 정무장관제2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제안창구인 '평등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1년에는 여성정책 전담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정무장관제2실 산하로 이관하여 여성정책의 연구, 수립 및 집행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 법률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94. 6. 국회내에 상설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女性の 就業 支援

26.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혼여성의 안정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 1.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학교급식 전면실시 등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7. 보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을 여성근로자 500인이상에서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동안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보육시설 7,590개소를 확충시킴으로써 국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의 보육율을 9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주에게는 건축비, 설치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교시설 등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93. 12. 제정된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을 실시하거나 직장탁아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제도는 현재 7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998년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8. 기혼여성에게 적합한 근로형태의 개발 및 실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가내근로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을 차등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992. 1.부터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6개 지방노동청에는 전문직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취업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9. 직업훈련기본법 제4조 제3항은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을 증

시하고 있으며, 1995년도에는 총 37,424명의 여성이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았다. 또한 1991. 10. 여성전용직업훈련원(안성여자직업훈련원)을 설립하였으며, 1994. 7.에는 이를 2년과정의 기능대학(안성여자기능대학)으로 개편하여 1996. 5. 현재 450명의 여성이 패션디자인, 정보기술, 전자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훈련을 받고 있다.

30.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동등한 권리보장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추진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현재 48.3%로서 1970년 39.3%, 1980년 42.8%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男女僱傭平等法の改正

31. 1987. 11.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89년과 1995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95년 8월 개정으로 추가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는 신체조건 등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제6조)

② 동일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을 정할 때 여성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제6조의2)

③ 가족수당 등 임금 이외의 금품지급이나 주택자금융자 등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제6조의3)

④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제7조)

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자근로자도 육아휴직 청구 가능(제11조)

⑥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고용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성차별 분쟁조정 외에 여성취업과 고용평등에 관한 협의도 할 수 있도록 기능 보장(제16조)

32.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래 채용과 근로조건 등에 있어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사회에 뿌리박힌

남녀차별의식과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의식과 관행을 타파하고 범국민적인 고용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년중 10월을 고용평등의 달로 설정하고 고용평등 등에 관한 홍보, 세미나, 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체 사용자들의 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공단지역 사용자와의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33. 서울지방법원은 1995. 5월 신입사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남자로 제한하는 모집광고를 낸 일부기업들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각 1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1995.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하여 모집·채용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도록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벌금액도 상향조정하여 모집·채용시 남녀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公職分野 女性參與 擴大措置

34. 1993. 2. 출범한 현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 공개채용시 여성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채용 목표비율(2000년까지 20%)을 정하여 선발예정 인원만큼 합격시키도록 하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직, 승진, 교육훈련등 모든 인사과정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과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暴力으로부터 女性 保護

35. 성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여성보호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1994. 1.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으나 위 특별법에서는 흉기를 휴대하

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및 각종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나 컴퓨터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 각종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가질수 있도록 하였다.

36. 남성의 성폭력행위에 대한 여성의 저항수단과 관련하여, “야간에 옷을 완전히 벗기우고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이 옆에 있던 칼을 들어 강간을 하려던 남성의 우측어깨를 찔러 사망케 한 것은 비록 과잉방위일지라도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으로 인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5.9.14. 선고 95노2673호)고 선고한 판결이 나왔는가 하면, 성폭행으로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여성이 성폭행을 해오던 남성을 살인한 경우에 그 특수 사정을 감안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의 폭을 넓힌 판결들도 나와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37.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임명된 성폭력특별보고관의 활동을 계기로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이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군대 위안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2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과거의 상처를 우리 스스로 치유하여 국민적·국가적 자증심을 고양한다는 방침하에 1993. 6.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에게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생계비 지급, 의료보호법에 근거한 의료보호, 생활안정지원금 500만원과 매월 25만원 지원, 무주택자의 경우 영구임대주

택에 우선입주기회 부여 등의 지원이 주어진다.

女性の 經濟的 權利 保護

38.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여러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가사노동의 잠재적인 소득의 가치는 각종 법제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가사노동자인 주부는 사고로 인한 배상금 지급시 유급노동자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는데 법률개정으로 이를 개선하였다.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은 부부간 생활비 공동부담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기여분제도 등을 인정함으로써 가사노동가치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4. 12. 개정된 상속세법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배우자-공제액과 배우자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재산형성에 대한 주부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한 결과이다. 1995년도에는 주부의 보험금 지급 선정기준이 상향조정되는 등 가사노동 가치를 세법과 보험관련 제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要保護女性을 위한 福祉政策

39. 빈곤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1989. 4.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였다. 1994년말 현재 전체 51,925 모자가정중 85.6%가 동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호의 내용은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의 지원, 시설보호,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이다.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 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호기간은 3년이며, 퇴소시에는 자립정착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무주택 모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40. 1995. 1.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 여성을 선도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였

다(제12조, 제19조).

정부는 윤락여성,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전국에 128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408명의 여성 복지상담원을 배치하여 요보호여성에 대한 신상 및 가정상담을 실시하고있고 상담결과에 따라 요보호여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21개소의 선도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女性の 政治的 權利

41.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서 여성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법률에 있어서도 여성을 이유로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42. 1996. 5. 30.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5대 국회의원중 여성의 비율은 14대의 2%보다는 높아졌으나 세계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995. 6. 실시된 지방의회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은 71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였고 광역의회 여성 의원은 55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5. 4.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지방의회 여성할당을 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광역의원 97명중 여성은 42명으로써 43.3%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자가 34.4% 당선되어 향후 여성의 참여율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43.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부정적인 가부장적인 전통, 여성정치인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여성 스스로의 소극적인 의식, 정당의 지원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나 선거

구제도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 12.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家族法 改正 推進

44. 성차별적 요소를 많이 두고 있던 가족법은 1990. 1. 개정되어 1991. 1. 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성차별적 요소가 남아있다는 여성계의 주장에 따라 정부는 민법학자 및 실무가로 구성된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1993. 6.부터 1996. 5.까지 3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가족법을 재검토하고 있다.

45. 이 개정작업의 주된 방향은 여자의 재혼금지기간(민법 제811조)의 삭제, 동성동본불혼 법제(제809조)의 근친혼 금지제도로의 전환, 호주제도의 폐지등이다.

제 4 조

46. 최초보고서에 설명된 것처럼 헌법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76조 제1항, 제2항, 제77조 제1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계엄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6조 제4항, 제77조 제5항).

47.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

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내심의 작용으로서의 신앙의 자유, 종교선택의 자유, 양심상의 결정과 침묵의 자유, 연구와 창작의 자유 등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으로 말미암아 당해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헌법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조치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선포시에도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48. 대한민국에서는 1993. 8. 12.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되었다. 이 명령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서 1993. 8. 19.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이 긴급명령은 검은 돈이 굴러 다니는 것을 차단하여 정경유착, 불르소득, 투기 등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분배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치의 성격상 전격적인 시행이 필요하였다.

계엄은 1987년 현행헌법 시행이후 단 한차례도 선포된 적이 없다.

제 5 조

49. 대한민국은 어떠한 방법을 막론하고 규약에 인정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거나 규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식으로 본 규약의 규정을 해석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 및 공명선거, 삼권분립, 사법부독립등의 제도에 의하여 보

장되고 있다.

50. 또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규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규약에 이러한 권리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훼손하고 제한하는 구실로 이용하지 않음은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제 6 조

제1항

生命權

51. 생명권은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생명권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형법은 제24장 살인의 죄(제250조- 제256조)에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서 범죄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인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胎兒의 保護

52. 대한민국은 분만후의 생명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예외적 사유는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할 경우, 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와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1995년 형법 개정과정에서 낙태

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태아의 생명도 생명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개정된 형법에서도 낙태죄를 존치하게 되었다.

妊産婦 및 嬰幼兒의 保護

53. 임신부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6. 5.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영유아사망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警察官에 의한 武器使用의 制限

54. 대한민국은 범죄행위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처벌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자의적인 총기 사용에 의한 생명박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무기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는 경찰관이 다음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도주하거나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②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항거·도주하거나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③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

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계속 불응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④ 대간첩작전 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때

⑤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제2항

死刑制度와 死刑對象犯罪

55. 대한민국은 형법이나 특별법의 일부 조항에서 사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형대상범죄를 내란죄(형법 제87조), 외환죄(형법 제92조), 간첩죄(형법 제98조)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살인(형법 제250조제1항), 존속살인(형법 제250조제2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등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 특수강도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등 죄질이 극히 중한 가정파괴범죄와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으로 하고 있다(형법 제66조).

강도와 단순한 강도강간은 사형대상범죄가 아니고, 다만 강도가 살인을 하였을 경우와 특수강도(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가 강간을 한 경우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개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형대상범죄로 하고 있다.

56. 형법 및 형사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무고한 시민을 납치·살해하고, 상습적으로 평온한 가정에 침입하여 강도·강간등을 자행하는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이고, 다만

생명권을 존중하는 인권규약과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형대상범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0. 12.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이들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수뢰죄, 관세포탈죄 등 15개 조항에서 사형을 폐지하였고, 1995. 12. 29. 공표된 개정형법에서는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득치사상죄, 강도치사죄 등 5개조문에서 사형을 폐지하였다.

57. 사형대상범죄일지라도 법정형이 사형으로만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무기징역형이나 유기징역형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중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58. 대법원에서는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인도적 또는 종교적 견지에서는 존귀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피해야 할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다른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것도 정당하게 용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죄)가 그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한다 할 수 없다.”(1987.9.8.선고, 87크1458호)고 판결하여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였으며, 이후에도 같은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1992.8.14.선고 92도1086호등).

다만 대법원에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중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여 극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1992.8.14.선고 92도1086호)고 하여 사형을 처단형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형법제338조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2건 제기되었으나 모두 헌법소원 제기절차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결정 1993.11.25. 89헌마36호, 1994.12.29. 90헌바13호).

59. 1991년-1996년간 사형선고 확정인원과 집행인원은 아래와 같은 바. 1995년 사형선고 확정인원이 많은 것은 '김기환' 등 6명이 지존파라는 범죄 단체를 결성하여 5명을 납치·살해하고 사체를 절단·소각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여 사형선고가 확정되는 등 집단흉악범죄에 대한 사형선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 1991-1996년 사형선고 확정과 집행인원

(단위 : 명)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6)
사형확정인원	29	16	10	5	19	2
사형집행인원	9	9	0	15	19	0

60. 사형선고가 재심이 된 경우는 1991년에 7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으며 재심청구된 사건도 모두 기각되었다.

適法節次에 의한 死刑宣告

61. 사형은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독립된 법원에 의해 공정한 재판에 의하여 선고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무죄추정, 실질적인 변호권 보장, 상소권 및 재심청구권 보장 등으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제4항

赦免 · 減刑請求權

62.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헌법 제26조(청원권), 청원법 제4조, 제6조,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사면 · 감형 · 복권), 사면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면 · 감형할 수 있음은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사형수중 사면 · 감형된 자는 1951년-1990년간에 사면1명, 감형35명이었으나, 1991년 이후에는 사면 · 감형이 없었던 바, 이는 사형확정된 범죄자가 모두 흉악범들로서 이들에 대한 사형선고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5항

兒童 및 妊産婦에 대한 死刑執行 禁止

63.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88. 12. 31. 소년법이 개정되어 사형금지연령이 16세 미만자에서 18세 미만자로 상향조정되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69조에서도 임신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제 7 조

拷問 또는 非人道的 處遇 禁止

64.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금지에 관하여는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 헌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국내법률에서 완벽히 구현되어 있다.

65.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 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는 형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등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1995. 12. 29.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경찰서 유치장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관서의 구속장소를 감찰하여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가 자행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도록 하고, 감찰 결과 고문 등 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6. 또한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위에 언급된 자백 뿐만 아니라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증거법적 측면에서 고문등이 피의자에게 가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고문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대법원판결도 나와 고문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영장없이 하루반 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15세 연하의 수사관으로부터 무릎을 꿇리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자기를 방어할 의지를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고, 기타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1993.9.28. 선고 93도1843호)이 대표적인 예이다.

67. 공무수행중의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므로 고문방지등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1995. 1. 1.부터 12. 31.까지 사이에 산하 검찰청 및 지청에서는 총 143회에 걸쳐 총 7,301명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위와같은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검찰직원에 대하여는 총 794회에 걸쳐 12,07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68. 특히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를 방지·적발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검찰에 인권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고문등 인권침해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992. 1.부터 각 경찰서 수사과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수사요원 교육, 유치장 점검 등 인권보호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1993. 5. 검찰청 감사관실에 인권침해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수사중 폭행·가혹행위등의 인권침해행위를 접수·처리하고 있다.

拷問 또는 非人道的 處遇를 당한 者의 救濟措置

69.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를 당한 피의자등은 범죄처벌을 담당하는 사법당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해 불법행위가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사상 가혹행위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음은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70. 1991년 이후 수사기관 종사자등이 직무와 관련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처벌받은 통계는 1991년 2건, 1992년 1건, 1993년 7건, 1994년 4건이다.

拷問防止協約 加入 및 最初報告書 提出

71. 대한민국 정부는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의 근절의지를 천명하고 국제적인 인권보장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1995. 1. 9.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 협약은 같은해 2. 8. 발효되었으며, 1996. 2. 9. 고문방지협약 최초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여 우리 정부의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殘酷한 刑罰 禁止

72.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41조에서는 형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행형법에서는 형의 집행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잔혹한 처벌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제 8 조

73. 노예제도, 예속상태 및 강제노동 금지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음은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74. 이러한 헌법규정의 정신에 따라 형법 제324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63조

에서는 소년과 여성에 대한 과도한 노동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1994. 1. 전면 개정된 직업안정법 제46조에서는 폭행, 감금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1995. 1. 5.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폭력등에 의한 윤락강요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한 강제예속상태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75. 규약 제8조 제3항 (C)호에 의하여 강제노동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와 형벌에 수반되는 노역을 함에 있어서도 강제노동 금지의 기본정신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남북대치의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병역법과 군사법원법 등에 의하여 병역의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형벌에 수반되는 노역을 하는 자에 대한 과도한 노동부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형법과 관련 예규에서는 일정한 근로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의 종류를 명시하며, 작업시간을 제한하여 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 9 조

제1항

身體의 自由, 自意的인 逮捕·抑留 禁止

76.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최초보고서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는 바, 헌법 제12조제1항과 제3항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3조(영장의 발부),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201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구체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95. 12. 29 개정·공포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77.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경우에는 엄격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단기간 유치하는 체포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하여 조사후 구속영장 발부절차를 밟고 있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임의동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임의동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1991. 3. 8. 개정하여 그 요건과 절차 및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동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의동행 형식의 체포 여지를 없애고 체포의 영장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78. 국가보안법상의 신체 구속 역시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영장주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수사과정에서 무언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례가 있어 1994. 1. 5.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7년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더욱 확실히 하였다.

제2항

逮捕理由와 嫌疑事實 通報

79.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혐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72조와 제209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5항 후단과 형사소송법 제87조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시에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즉시 구속등의 이유와 일시·장소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혐의사실의 요지에 대한 통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대검찰청 예규로서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혐의사실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 제87조에서는 구속의 이유뿐만 아니라 혐의사실의 요지까지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규약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하였다.

제3항

迅速한 刑事裁判節次의 進行

80. 헌법 제27조 제3항은 피고인이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에서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92조에서 법원에서의 신속한 형사재판절차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81.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최대 50일까지 구속수사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형사사건의 최대 30일보다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혐의내용이 간첩죄등 전문적이고 장기간의 수사와 정보수집을 필요로 하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와 제10조(불고지)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들에 대하여까지 일반 형사사건보다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1992.4.14. 90헌바82호)는 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국가보안법상의 나머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이 되어 있다(96헌가8,9,10호).

未決囚의 拘禁 抑制

82. 대한민국 헌법상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사에 있어서의 강제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199조제1항 단서를 수정하여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미결수의 구금억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체 형사사건중 구속사건의 비율은 1990년 8.7%에서 1995년 7.3%로 낮아졌으며,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83. 개정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서는 기소후에만 인정되던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전 단계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석제도 활용실태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구분 년도	청 구	허 가	불 허 가	직권보석
1991년	41,624	25,406	16,218	91
1992년	41,064	24,481	16,583	116
1993년	45,911	26,032	19,879	199
1994년	41,833	23,297	18,536	235
1995년	45,381	26,001	19,380	323

제4항

逮捕 및 拘束適否審査

84.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와 제214조의3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포된 자의 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헌법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속적부심사제도 활용실태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년도	구분 접 수	처 리		
		석 방	기 각	취 하
1991년	11,984	6,249	5,049	686
1992년	10,682	5,654	4,486	542
1993년	11,757	6,043	5,148	566
1994년	10,201	5,245	4,474	482
1995년	11,032	5,513	5,022	497

제5항

刑事補償

85. 헌법 제28조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형사보상금의 지급상한액은 1988. 2. 24. 개정된 형사보상법시행령에서 1일 8,000원에서 15,000원으로 증액하였다가, 1991. 6. 19.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상한액을 금액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상청구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하도록 사실상 상향조정하면서 물가의 변동등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총액단위 : 천원)

년 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건 수	123건	147건	207건	238건	280건
총 액	307,748	355,678	760,594	941,586	1,305,808

제 10 조

제1항

行刑法 改正을 통한 收容者 人權保護

86. 수용자는 최초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권존중의 정신에 따라 누구나 인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데, 행형법 개정으로 그 처우가 더욱 개선되었다.

수용자(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화개선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수용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1995. 1. 5. 행형법을 대폭 개정하여 그동안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일부 부적합하게 된 규정이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사회복지에 적합한 선진 교정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위 행형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행형관련법규는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피구금자처우 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 행형법의 개정된 주요내용은 각 항목에 대한 기술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收容者에 대한 基本的 處遇 改善

87. 수형자의 위생관리, 도주방지 등을 목적으로 1912년부터 오랜기간동안 시행해 오던 삭발제도를 폐지하여 수형자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고 강제 삭발로 인한 거부감을 해소시켜 교화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출소후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행형법 제23조).

88. 과거 미결수용자의 식량과 의류는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자비부담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용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행형법 제20조, 제21조).

收容者の 交通權 擴大

89. 수용자에 대한 접견은 친족에게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하던 것을 친족과 비친족 구분없이 교화상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개정하여 수용자의 교통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행형법 제18조 제2항), 특히 모범수형자는 별도의 개방된 장소에서 교도관의 입회없이 자유로이 접견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 관리의 필요상 수용자에 대한 접견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미결수용자의 경우 1일 1회, 수형자의 경우 행형성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일 1회, 주 1회, 월 3회, 월 2회로 나누어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90. 또한 수용자의 집필제도를 개선하여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가한 집필용구의 개인소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모든 수용자가 서신이나 소송서류 작성외에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작품의 창작활동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학작품을 신문과 잡지 등에 발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행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66조, 제67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46조).

收容者の 懲罰 改善

91. 수용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조치로 규율위반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규정을 인도적 처우와 교육행형의 이념에 맞도록 개정하여 규율위반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징벌의 종류중 減食罰, 접견·서신금지, 작업정지, 운동정지 등을 폐지, 9종의 징벌종류를 5종으로 축소하고 도서열독금지를 열람제한으로 완화하여 기간도 단축하는 등 규율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최소화하였다(행형법 제46조 제2항).

또한 부적합한 일부 戒具의 명칭과 재질을 개선하고 계구의 모양과 규격,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계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였다(행형법 제14조 제2항, 제3항, 戒具의製式과使用節次에 관한규칙).

長期左翼囚

92. 대한민국에는 20여년이상 수용생활을 하는 장기좌익수가 몇 명 있는데 이들은 국가전복기도, 간첩, 양민학살등 반인도적 범죄를 범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서 전쟁포로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이 오히려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타도를 계속 주장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형성적·생활태도·사회적적응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행형법상의 가석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석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기좌익수라 하더라도 심한고령자 및 질병자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크지 않는 한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대사면으로 김선명, 안학섭등 약 20명의 장기좌익수가 석방되었다.

93. 수용시설내에 있는 장기좌익수는 접견, 서신, 식사, 운동, 의료, 수용 등 모든면에서 일반수형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유민주사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사회참관등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상과 신념의 변경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강요에 의한 사상전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전향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

제2항

未決收容者의 處遇 改善